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립소방병원 설립·운영 목적에 공공의료 제공 명시 등〉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36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립소방병원 설립·운영 목적에 공공의료 제공 명시	3
2. 용어 명확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규정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8. 12.
3. 회부연월일 : 2025.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과 참혹·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음.

그런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이외에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와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공공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아니함.

또한 국립소방병원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사용·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어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4조).

Ⅲ. 검토의견

1. 국립소방병원 설립·운영 목적에 공공의료 제공 명시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u>이바지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의료 제공에 기여함을---</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진료 등을 위한 국립소방병원을 충청북도 음성에 건립하고 있는데, 2025년 6월에 병원건물 건립을 완료하였고 2025년 9월 현재 의료진 구성 및 의료장비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6월에 국립소방병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립소방병원 개요 >

□ 건립개요

- (규 모)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종합병원
- (사업추진 개요)
 - 2025. 6. : 국립소방병원 준공
 - 2025. 12. : 의료기관 개설 허가(예정)
 - 2026. 6. : 국립소방병원 개원(예정)
- (위 치)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531(충북혁신도시 내)

□ 주요기능

- 소방공무원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 생애기간 동안 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이력을 관리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화상·정신건강·재활(근골격계)·건강증진센터 및 소방의학연구소 등 4센터·1연구소 중심으로 특화된 주요 상병 치료와 치유 및 연구 기능 강화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 수행

※ 자료 : 소방청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제1조),

이 법 제5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소방병원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료와 연구 외에 응급의료사업(제4호), 공공보건의료사업(제5호),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사업(제8호) 등이

명시되어 있고,

소방청이 제출한 국립소방병원의 주요기능에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 수행”이 명시되어 있음.

< 국립소방병원 사업 개요 >

□ 근거: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사업내용

1. 소방공무원,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의무소방원 등 (이하 이 조에서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진료
2. 소방공무원등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¹⁾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사업²⁾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³⁾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대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8. 소방공무원등 및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제이론 상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개별 조문을 해석·집행할 때 그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는 지침으로 기능함⁴⁾.

이를 감안할 때 현행법은 목적 조문이 소방병원의 사업 내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국립소방병원의 사업 내용과 이 법의 제정 목적 간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의료활동이라는 의미로 “공공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공의료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239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보건의료”로 규정하고 있고⁵⁾, 현행법 제5조제1항제5호 역시 “공공보건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⁶⁾ 등을 감안해서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의료” 용어를 “공공보건의료”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2.3., 2021.8.17., 2022.6.10.>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6) 소방청은 소방병원은 소방청(국가)가 설립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제5호·제8호에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공의료에 기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목적 조문에 공공의료제공을 추가하는 경우, 소방청이 제시한 소방병원의 기능에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사업 내용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외에 ‘지역주민의 진료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참조해서⁷⁾

“지역주민의 진료 사업”도 소방병원의 사업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해당 조항은 국립소방병원이 지역주민 진료 및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과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임.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28., 2016.2.3.>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삭제<2015.1.28.>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2. 용어 명확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규정

개정안은 국가가 소방병원에 대하여 소방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u>대부</u>)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u>대부</u>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u>대부</u> <u>등</u>) ① ----- ----- ----- <u>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u>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소방병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소방병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제7조),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면서

(제6조),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용허가”로(제2조제7호),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 정의하여(제2조제8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용어를 달리하고 있음⁸⁾.

국립소방병원 건물은 국가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여 동법 제30조에

8)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른 “사용허가”에 의해 사용·수익을 허용할 수 있음⁹⁾.

그런데, 현행법은 소방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14조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만을 볼 때는 특수법인인 국립소방병원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만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¹⁰⁾.

이에 개정안은 소방병원에 대하여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수익도 허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해석 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방병원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다만, 현행법 제14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 제14조제1항을 입법하는 경우, 현행법 제14조제2항도 이를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9) 소방청은 현재는 국립소방병원의 일반재산은 없으나, 향후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함.

※예: 국립소방병원 신축·이전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의 기존 건물 및 주차장을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경우 → 이 경우 다른 기관(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가 가능함.

10) 다만, 국유재산 무상대부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도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현재 소방청은 현행법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 대부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운영하고 있음..

* 법제처 법령해석 전문은 [참고] 참조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해당 조항은 국유재산을 소방병원 법인(특수법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법 해석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을 위해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이견이 없다고 밝힘.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1

국립소방병원 운영 계획

□ 운영주체 : 서울대병원 위탁운영('22.6.21. 계약체결)

□ 운영인력

※ 302병상 100% 운영 시

전체인력	전문의	간호사	간호기능직	약무직	보건직	사무직	기술직	운영기능직
616	49	288	117	12	63	36	17	34

※ 병상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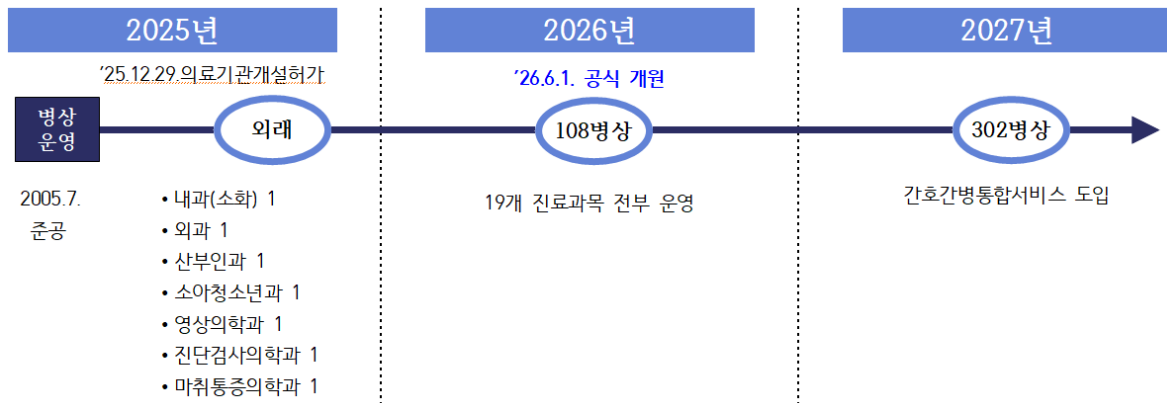
(‘26년) 108병상/370명(의사 49명) ⇨ (‘27년) 302병상/616명(의사직 49명)

□ 진료과 운영 계획

연 번	진료과목		센터구분	연번	진료과목		센터구분
1	외과		화상센터	9	내과	호흡기내과	일반진료
2	성형외과					감염내과	
3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센터	10	소아청소년과		
4	정형외과		근골격재활센터	11	산부인과(부인과)		
5	재활의학과			12	신경과		
6	신경외과			13	응급의학과		
7	직업환경의학과		건강증진센터	14	진단검사와		
8	가정의학과			15	마취통증과		
9	내과	순환기내과	일반진료	16	영상의학과		
		소화기내과		17	임원의학과		
		신장내과		18	이비인후과		
		내분비내과		19	치과		

※ 소방특화 센터

화상센터 (외과/성형외과 등)	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근골격재활센터 (정형외과/재활의학과)	건강증진센터 (직업환경/가정의학과)
재난/화재/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화상 및 중증외상에 대한 전문 치료 제공	재난/사고 현장 경험 후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전문 치료 제공	화상, 호흡기, 근골격계 등 재난/사고 관련 후유증에 대한 전문재활 치료 제공	일반 건강검진, 소방 공무원 특수검진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26년 : (3~5월) 시범진료 및 개원준비 → (6월) 개원

1. 질의요지

가. 국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함)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면서(제6조)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허가”(제2조제7호),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제2조제8호)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법 제23조에서는 국가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2호),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3호)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 판단 시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법에 따른 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제1조)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전시포로, 무력충돌희생자, 전상자 및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응급구호사업·자원봉사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제4호)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십자

법 제23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국유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7호의 사용허가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질의 가 및 질의 나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적십자법 제23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